

부산지방법원 2023. 12. 14 선고 2022가단327805 판결 [보증금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득열

피 고 1. B

2. C

3. D

변 론 종 결 2023. 9. 14.

판 결 선 고 2023. 12. 14.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102,555,930원, 피고 C는 17,724,206원, 피고 D은 17,281,56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2. 10.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 1) 피고들은 'E'이라는 브랜드의 커피 프랜차이즈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F(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와 각 위 'E'의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을 운영하던 가맹점주들이다. 피고들 등은 이 사건 회사의 부실 경영을 해결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였다.
- 2)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게 회사운동을 위한 자금을 대여하였고,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하려고 한 사람이다.

나. 차용보증동의서 작성

- 1) 원고는 2021. 6. 3. 이 사건 회사에 회사 운영을 위한 긴급자금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고 한다).
- 2) 그 무렵 위 차용금 2억 5,000만 원 중 1억 7,500만 원에 대하여 피고들 등은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점장비상대책위원회원들은 회사운동을 위한 긴급자금 차입에 대해 회사인수 희망자(채권자:원고)의 회사인수 불발시 아래 각자 할당된 금액에 대해 지급책임을 보증합니다'라는 내용의 차용보증동의서(이하 '이 사건 차용보증동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 3) 이 사건 차용보증동의서에서 원고에게, 피고 B는 102,555,930원, 피고 C는 26,724,206원, 피고 D는 17,281,561원의 지급책임을 보증하였다.

다. 원고의 이 사건 회사 인수 포기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인수를 위해 해결되어야 할 전제조건 등이 충족되지 않아 이 사건 회사

인수를 포기하였다.

라. 피고 C의 일부 지급

한편 피고 C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보증동의서에 따른 보증금액 중 9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들은 이 사건 차용보증동의서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차용금지급채무 중 일부를 보증하였으므로, 보증책임을 이행해야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 B는 차용금 102,555,930원, 피고 C는 일부 변제하고 남은 나머지 차용금 17,724,206원, 피고 D은 차용금 17,281,56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최후 송달일인 2022. 10.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 D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C의 항변

1) 항변

피고 B와 이 사건 회사의 상무이사 겸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의 대표인 H이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할 테니,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보증을 해도 피고 C 등에는 아무 피해가 없을 것이라며 이 사건 차용보증동의서 작성을 종용하고 유혹하였다. 그리고 피고 B와 G은 이 사건 차용금 중 피고 C가 보증한 부분을 변제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채무변제확약서를 작성하였다. H은 채무변제확약서 내용을 원고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원고는 답하였다.

원고, 피고 B, H은 피고 C의 보증채무에 관해 아무 책임이 없음을 인지하고 있었고, H이 원고에게 피고 C의 보증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묻지 말라고 하였으며, 원고 또한 이를 인식하였다.

따라서 피고 C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차용보증동의서에 따른 지급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2) 판단

을가 제6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 B와 G은 2021. 12. 30. 피고 C에게 '만일 원고가 피고 C에게 상기 지급보증금액에 대해 변제를 요청시 G은 피고 C를 대신하여 상기 보증금액 26,724,206원 및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부가적 금액(이자 및 연체이자)을 포함하여 원고에게 지급함으로써 피고 C가 상기 관련하여 변제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의 채무변제확약서를 작성해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채무변제확약서는 피고 B, G, 피고 C 사이에 작성되어 원고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않으며, 원고가 G 등의 채무변제확약서에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 C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차용보증동의서에 따른 지급보증책임을 면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 D의 항변

1) 항변

이 사건 차용금 변제책임은 이 사건 회사가 부담한다. 또한 이 사건 회사가 도산 위기에 처했을 때 모든 업무를 대신하여 관장하던 G은 채무변제확약서를 통해 가맹계약을 맺은 매장에서 판매되는 원부자재대의 수익금중 이 사건 회사에 지급해야 할 금액에서 이 사건 차용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D은 이 사건 차용금 중 피고 D 부담 부분에 대한 지급책임을 없다.

2) 판단

을나 제1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 B와 G은 2021. 12. 30. 피고 D에게 'G은 이 사건 회사의 가맹 매장의 원부자재 판매수익금중 이 사건 회사에게 지급해야 할 지급액에서 변제 조치를 하기로 하며, ...만일 원고가 피고 D에게 상기 지급보증금액에 대해 변제를 요청시 G은 피고 D을 대신하여 상기 보증금액 17,281,561원 및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부가적 금액(이자 및 연체이자)을 포함하여 원고에게 지급함으로써 피고 D이 상기 관련하여 변제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의 채무변제확약서를 작성해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는 위 채무변제확약서의당사자가 아니고,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 D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차용보증동의서에 따른 지급보증책임을 면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D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영